국가보고서

태국 산업재해 보상보험

태국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태국 노동부(Ministry of Labour)산하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Office, SSO)이 관장한다. 사회보장국은 두 개의 기금을 관리하는데 하나는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 보상기금(Workmen's Compensation Fund)이다. 근로자 보상기금으로 태국 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 급여를 제공한다.

1. 근로자 보상기금 개요

1.1 역사적 배경

태국의 근로자 보상기금은 국가행정위원회(National Executive Council)의 제 103호 공표에 따라 내무부 노동과(Department of Labour, the Ministry of Interior)에서 수립하였으며 1974년 1월 1일부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16년 후인 1990년, 사회보장국이 설립 되었을 때 근로자 보상기금 관리담당 부서가 내무부 노동과에서 사회보장국으로 변경되었다. 근로자 보상법은 1995년 6월 비준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근로자 보상기금은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대신하며 고용에 결과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1.2 보상범위

근로자 보상기금은 다음 항목을 제외하고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가) 농업, 임업, 수산업 및 가축업 등 연중 근로자 고용이 한시적인 산업의 근로자
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 정부기관 근로자
다) 비영리단체의 근로자
라) 국영기업의 근로자
마) 사립학교 교사 및 교장(사립학교법에 따름)

2013년에 근로자 보상기금을 납부하는 등록된 사업주 수는 총 347,581명이었으며 작업 관련 부상 및 질병으로 보상받는 근로자수는 8,901,624명이었다. 이는 전년대비 사업주 수는 1.13%, 근로자수는 4.29% 증가한 수치다.

1.3 보험료

근로자 보상기금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하며 보험료는 근로자 개인의 연봉에 따라 책정되며 년 240,000바트(약 840만원)를 넘지 않는다.

근로자 보상기금 출연금은 부상이나 질병, 장기손실, 장애, 사망 및 작업 관련으로 인한 실종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 된다.

보험료 요율은 첫 4년 동안은 임금의 0.2%~1.0%로 산업분류별로 다르며 이를 **'기본 요율**(Basic Rate)'이라 부른다. 5년째부터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 요율은 전 4년간 근로자의 산업 재해 기록에 따라 증가 및 감소할 수 있다. 5년차부터 이후로 적용되는 요율을 **'경험 요율**(Experience Rate)'이라 부른다.

경험 요율은 사업장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이 낮거나 없을 경우 20%에서 80%까지 감소한다. 만약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횟수가 높거나 보상 청구금액이 높을 경우 요율은 20%에서 최대 150%까지 증가한다. 이는 사업주가 사업장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는데 동기를 부여 할 수 있다.

2013년 근로자 보상기금은 347,950개의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이중 '기본 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전체의 33.85%를 차지하는 117,771개소이며 '경험 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전체의 66.15%를 차지하는 230,179개소였다. '경험 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 230,179개소 중 59.31%에 해당하는 206,373개소의 사업주가 할인된 요율을 적용받았고 6.26%(21,806개소)가 할증된 요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 보상 급여

보상 급여는 의료서비스나 재활 및 장례 보조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다. 보상 급여는 다음과 같이 4가지 경우에 지급된다.

(1) 작업 관련 부상이나 질병으로 연속일수 3일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

(2) 신체 장기 일부가 손실된 근로자에 대한 보상

(3) 장애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

(4) 사망 및 실종 사고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

2013년에는 111,894명의 근로자에게 보상 급여로 총 17억 4316만 바트(약 610억원)의 근로자 보상 급여가 지급되었다. 이중 9억 6148만 바트(약 336억원)가 보상비용으로 지급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의료서비스 비용이 7억 5934만 바트(약 265억원), 장례 보조비용이 1946만 바트(약 6억8천만원), 재활 비용이 288만 바트(약 1억원)로 그 뒤를 따랐다.

1.5 재활 서비스

재활 서비스는 고용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의 결과로 발생한 장애 근로자가 사회에 복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말하며 여기에는 장애를 입은 장기를 보조하는데 사용되는 인공 기관장치나 장비 및 부품이 포함된다. 재활 활동에 드는 서비스 비용은 건당 20,000바트(약 70만원)를 넘어서는 안 되며 신체 일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치료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서비스 비용 또한 20,000바트(약 70만원)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 서비스는 산업재활센터(Industrial Rehabilitation Center, IRC)가 제공하며 IRC센터는 빠툼타니주 므앙지구, 라용주 니콤빠타나 지구, 콘 카엔주 므앙지구, 치앙 마이주 매 림지구 및 송클라주 핫 야이지구에 있다. 산업재활센터는 의료 재활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정신적 재활 및 사회적 재활 서비스와 함께 제공한다. 산업재활센터가 제공하는 총 재활 과정에는 경력 카운슬링과 고용 촉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활 과정을 진행 하면서 근로자는 의료 재활 및 직업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직업 재활 프로그램에서는 센터가 근로자의 건강상태나 직업 종류, 실험실이나 당시의 시장 상황을 포함한 재활에 필요한 요소 등을 고려한다. 재활자가 업무시스템에 재진입 할 준비가 되면 센터는 약 3~4개월의 업무 준비서비스 및 약 4~12개월의 직업 훈련을 제공한다.

2013년 8월까지 997명의 근로자가 재활 서비스를 받았고 273명이 과정을 이수했다. 이수한 237명 중 141명이 자신이 본래 일하던 사업장으로 복귀하였고 37명이 새로운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얻었으며 95명이 자영업을 시작하였다.

2. 도전과제

사회보장국은 근로자보상보험법(Workmen's Compensation Act B.E.

2537)개정의 일환인 ‘법 개정 및 급여 증가’ 신사업에 착수하여 피보험인을 위한 급여의 운용 효율성을 지원하고 증가할 계획으로 사회보장국은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1) 전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 근로자를 보상범위에 포함

(2) 월 보상 범위를 급여의 60%에서 70%로 증가

(3) 장례 보조비용을 증가하되 적어도 일일 최저 임금 최대 요율의 100배가 되도록 함

(4) 장애에 대한 지급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

(5) 사망 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지급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6) 납부 기한 내 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한 추가 지불금액을 월 3%에서 월 2%로 축소